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 결

사건 2023고단708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심요한(기소), 박신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지송이(국선)

판결선고 2023.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여 크레인마스터 등의 장비출고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5.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야적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크레인마스터를 1,780,000원에 E에게 판매한 후 그 무렵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에게 시가 합계 115,800,000원 상당의 크레인마스터 348,196kg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1. 횡령사건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각주1>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크레인마스터를 판매한 후그 판매대금 합계 1억 1,58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전체 피해금액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회사가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루어진 가압류의 해방공탁금으로 피해금액인 1억 1,580만 원을 공탁하였다.<각주2>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4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

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효송

별 지

[별 지]

범죄일람표

순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범행방법	무게	피해금
1	2021. 12. 15.	충북 진천군 D 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야적장	피해자 회사 소유인 크레인 마스터를 임의 로 판매	미상	1,780,000원
2	2021, 12, 17.			미상	800,000원
3	2021. 12. 29.			미상	6,560,000원
4	2022. 1. 5.			미상	4,000,000원
5	2022. 1. 12.			미상	5,590,000원
6	2022. 1. 18.			미상	3,850,000원
7	2022. 1. 19.			미상	3,620,000원
8	2022. 1. 22.			미상	5,340,000원
9	2022. 1. 24.			미상	1,000,000원
10	2022. 2. 3.			미상	5,900,000원
11	2022. 2. 11.			미상	4,580,000원
12	2022. 2. 15.			미상	5,340,000원
13	2022. 2. 21.			미상	5,390,000원
14	2022. 2. 22.			미상	5,350,000원
15	2022. 3. 1.			미상	5,330,000원
16	2022. 3. 10.			미상	8,200,000원
17	2022. 3. 26.			미상	7,820,000원
18	2022. 4. 5.			미상	6,050,000원
19	2022. 4. 12.			미상	3,140,000원
20	2022. 4. 18.			미상	8,780,000원
21	2022, 4, 22,			미상	3,770,000원
22	2022. 5. 2.			미상	4,300,000원
23	2022. 5. 10.			미상	4,950,000원
24	2022. 5. 20.			미상	4,360,000원
합계				348,196kg	115,800,000원

각주1: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고려되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5,000만 원을 변제한 후 가압류해방공탁금으로 피해금액인 1억 1,58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후 위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 행을 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담보되었다는 사정은 위 양형기준이 정한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각주2: 피해자 회사는 2022. 9. 1.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1억 1,58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카단21401), 위 법원이 2022. 9. 5.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2022. 9. 15. 위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 탁금으로 1억 1,580만 원을 공탁하였다(위 법원 2022년 금 제1094호). 피해자 회사는 2023. 6. 5.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위 사건이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가단60610).